

서울특별시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396
------------	------

2016년 12월 19일
교육위원회

I. 심사경과

1.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6년 8월 25일, 박마루 의원
2. 회부일자 : 2016년 8월 26일
3. 상정일자
 - 제271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10차 교육위원회
(2016년 12월 19일 상정·원안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박마루 의원)

1. 제안이유

- 가. 타 지자체에서 화장실의 위생 및 미관 개선과 이용 편의 등을 위해 화장실의 이미지 개선 차원에서 ‘휴지통 없는 화장실’ 사업이 운영 중임.
- 나. 이에, 서울시 교육청, 교육청 소속기관 및 학교 화장실에서 휴지통을 없애는 대신 여자화장실에 위생용품수거함을 설치하는 것을 의무

사항으로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화장실 환경 조성을 통해 시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장애인화장실 및 여자화장실 대변기 칸막이 안에는 위생용품수거함을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된 임의 규정을 ‘위생용품수거함을 설치해야 한다’라는 의무 규정으로 개정함(안 제4조제5호)

Ⅲ.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김창범)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2016년 8월 25일 박마루 의원에 의해 의안번호 제1396호로 발의되어 2016년 8월 26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개정조례안은 서울시교육청 소속 기관 및 학교 화장실 중 여자화장실에 위생용품수거함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쾌적한 화장실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 검토의견

- 현재 서울시교육청은 교육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서울시와 공동으로 ‘「꾸미고 꿈꾸는 학교 화장실」 만들기’ 사업 등 학교화장실 개선 사업을 꾸준히 추진해 오고 있으며,

서울시의회도 학교내 화장실 개선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난 2015년 12월 31일 「서울특별시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 동 개정조례안은 현재 서울시교육청 소속 기관 및 학교 화장실 중 여

자화장실에 “재량적으로” 설치하도록 한 위생용품수거함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타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¹⁾ “휴지통 없는 화장실” 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화장실의 악취 및 실내 공기오염을 제거하여 화장실에 대한 이미지를 제고하려는 것으로 개정 취지 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 현재 서울시교육청 소관 기관 및 학교의 화장실에는 총 66,367개의 대변기 칸이 있으며 장애인 및 여성이 사용하는 화장실의 경우 남성 및 일반화장실과는 달리 위생용품이 물에 쉽게 분해되는 재질이 아니어서 별도의 수거함 설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런 점에서 교육청에서도 위생용품수거함의 설치 필요성을 인식하여 현재의 “설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책무규정을 “위생용품수거함을 설치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으로 개정하는 것에 대해 “의견 없음”을 회신한바 있습니다.

- 그러나 동 조례안에 첨부된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모든 화장실 66,367개에 위생용품수거함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약 33억 18백만원이라는 적지 않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바²⁾,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예산의 유용성을 감안하여 화장실을 신·증축하거나 화장실 개선사업을 할 경우 이를 적용해 달라는 것을 의견으로 제출하였습니다(체육건강과-22799,교육시설안전과-7046).

- 따라서 동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현재 위생용품수거함의 설치 현황에 대한 집행부의 충분한 설명과 함께, 수거함 설치의 시급성과 현재

1) 서울시송파구청은 2012년 11월부터 관내 공중화장실과 공공시설의 휴지통을 없앴고, 인천 계양구는 2013년 구청 및 의회청사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휴지통 없는 화장실’을 공용시설까지 확대 시행함 대전광역시 서구는 2016년 7월부터 ‘휴지통 없는 공중화장실’ 사업을 전면 운영함. 또한 서울도시철도공사는 2012년부터 지하철 5~8호선 화장실의 휴지통을 없애는 ‘휴지통 없는 화장실’ 사업을 진행해 나가는 등 휴지통 없는 화장실은 점차 확대되고 있음.,

2) 현재 위생용품수거함이 설치된 장애인화장실 및 여성화장실이 없다고 가정할 경우 약 33억 18백만원이 소요됨.

의 교육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고, 서울시교육청의 재정여건에 맞게 연차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진행해 나가는 것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V. 토론요지 : 없음.

VI. 수정안의 요지 : 해당 없음.

VII.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의원 전원 찬성)

VI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IX.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호 중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를 “설치하여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화장실의 유지·관리) (생략) 1. ~ 4. (생략) 5. 화장실 대변기 칸막이에는 휴지통을 없애고, 장애인화장실 및 여자화장실 대변기 칸막이 안에는 위생용품수거함을 <u>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u> 한다. 6. ~ 8. (생략)	제4조(화장실의 유지·관리)(현행과 같음) 1. ~ 4. (현행과 같음) 5. ----- ----- ----- ----- <u>설치하여야</u> -----. 6. ~ 8. (현행과 같음)